

지급보증거래 약정서

(기 업 용)

수 입 인 지

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앞

20 년 월 일

본 인_____(인) 주 소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본인은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지급보증 거래를 함에 있어 "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"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
제1조 거래조건

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"□□"내에 "∨"표시합니다.)

지급보증과목 (지급보증종류)	()	거 래 구 분		도거 래 별거 래			
지급보증 (한도)금액	금 원(원금·이자·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)						
지급보증 거래기간	년 월 일 까지						
지급보증 부탁방법	은행이 정하는 지급보증신청서에 의합니다.						
지급보증의 시기	 □ 지급보증개시일에 전액 보증합니다. □ 지급보증개시일로부터 ()년 ()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보증합니다. □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보증합니다. 						
지급보증의 방법	□ 지급보증서의 발급 □ 어음보증□ 어음인수□ 기타()						
보증료 율 등	□고정(은행여신거 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)	래기본약관 제3조		최고 연			
	년 %	(%)	적용)	%			
최초 지급보증 시의 조건	보증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	 □ 지급보증일에 주채무상환기일까지의 보증료를 지급합니다. □ 최초보증료는 지급보증일에 그 후의 보증료는 지급한 보증료의 계산최종일 익일에 ()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. □ 지급보증시마다 지급보증거래기간 만료일까지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그 후의 보증료는 지급보증거래만료일 익일부터 ()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. 					
	보증료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	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일 단위로 계 산합니다.					

제2조 초과보증

은행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조의 지급보증한도액이나 지급보증거래기간을 넘어서 일 시적으로 초과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그 초과보증에 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 니다.

제3조 감액・정지

① 국가경제·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

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,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그 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- ② 전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·정 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.
- ③ 제1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 감액으로 인한 초과지급보증금액 상당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.

제4조 주채무의 이행의무

은행이 지급보증한 주채무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전에 지급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주 채무의 지급기일에 본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 은행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합니다.

제5조 통지 의무

- ① 본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주채무에 관하여 경개·상계·면제·혼동·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그 소멸이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은행에 통지합니다.
- ② 본인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거나 담보물건이나 시효의 변동 등 은행의 보증채무 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통지합니다.
- ③ 제1항, 제2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은행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, 본인이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지고 곧 이를 갚습니다.

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

은행이 이 약정에 기해 따로 발급한 지급보증서상의 사전지급요건(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, 파산·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)에 따라 보증기일 도래전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아니하고 또 주채무의 기한도 래여부에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며, 이행의 방법·금액은 지급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제7조 특별배상금

- ① 본인이 제4조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이행일 또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료와 지연배상금을 특별배 상금으로 지급합니다.
- ② 제5조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채무 소멸일 익일부터 그 통지 도달일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료 해당액을 특별배상금으로 지급합니다.

제8조 대위변제에 따른 상환범위

은행이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곧 다음 각 호

- 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합니다.
- 1. 보증채무 이행금액
- 2.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
- 3. 기타 본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든 비용
- 4.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

제9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

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.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.

구 분	20 .	20 .	20 .	20 .	20 .
부채비율	%	%	%	%	%
자기자본비율	%	%	%	%	%
()비율	%	%	%	%	%
()비율	%	%	%	%	%

-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.
 - 1. 합병,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 · 임대
 - 2.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
 - 3.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
 - 4.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
 - 5. 기업구조 개선 작업(Work Out)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.
-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.
 - 1.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
 - 2. 지배주주의 출자
 - 3.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제10조 자료의 제출 등

-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 - 1. 매분기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
 - 2. 매반기 : 반기결산보고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
 - 3. 매 년 :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(결산재무제표), 연결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 등록증, 주주명부, 정관,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,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 (3개년), 주요거래처현황,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(KS, ISO, 특허권 등), 노사분규확인서, 기타 제품설명서, 동업계 참고자료 등
 - 4. 수 시 :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
-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 - 1.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현황
 - 2.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
 - 3.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

제11조 기타 특약사항

			본	인	(인)	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.						
본	인			(인		